##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90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고용진·김수흥·김원이

김주영 • 박찬대 • 박홍근

송영길 · 양경숙 · 오영훈

이광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분기와 반기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도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1항).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1항 중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해당 용역이 제공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에 관한 특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31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협조) ①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	
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	
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	
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	<u>해당 용역이 제공</u>
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u>연도 2월 말일</u> 까지 사업장 소재	<u>말일</u>
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